

돌아 보기

: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정리 대외홍보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18)





제1차 개정('90. 1. 13.)

개정사유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제2항 : 신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제2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4차 개정('95. 1. 5.)

개정사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노·사가 협조적인 관계에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개정내용

제2항제1호 : 신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제2항제1호~제5호 → 제2항제2호~제6호

제6차 개정('96. 12. 31.)

개정사유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작업환경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근로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신뢰성 제고

개정내용

제2항제5호의2 신설 : 5의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제9차 개정('99. 2. 8.)

개정사유

제2조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문구를 정리



개정내용

제2항제5호의2 : 작업환경측정·평가 → 작업환경 측정

제21차 개정('07. 7. 27.)

개정사유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개편하여 자체검사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 자체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의 삭제

개정내용

제2항 : 각호 → 각 호

제4호 : 삭제

제24차 개정('09. 2. 6.)

개정사유

노사협의체는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회의결과 통지 요청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통지요청 사항에 노사협의체의 의결 사항을 포함

개정내용

제1항 : 이 법에 의한 → 이 법에 따른 / 게시 또는 비치하여 →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제2항 :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제1호 :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제2호 : 각호 → 각 호

제3호 : 각호 → 각 호

제5호 → 제4호

제5의2호 → 제5호

제6호 : 기타 노동부령이 → 그밖에 노동부령으로

제28차 개정('10. 6. 4.)

개정사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함에 따라 부처명칭 등 관계 조문의 용어 정비

개정내용

제28항제6호 : 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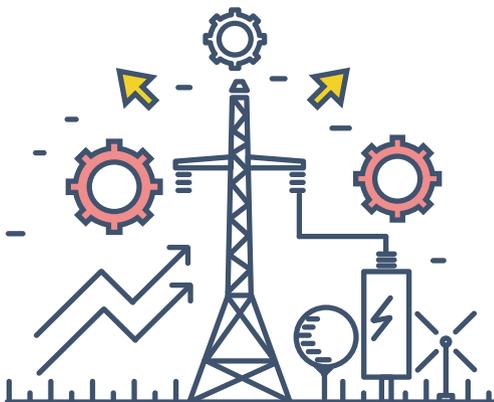
제29차 개정('11. 7. 25.)

개정사유

도급사업시 사업주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개정내용

제28항 제3호 : 제29조제1항 → 제29조제2항



제32차 개정('13. 6. 12.)

개정사유

법령요지의 게시의무 취지는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상시 근로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 현행 규정은 법령요지의 게시장소가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여러 개의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 게시장소를 작업장으로 개정

※ 작업장 : 사업장 내에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개개의 작업현장을 말하며, 주로 건물 등에 의해 판단됨

※ 사업장 : 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작업의 일체를 이루는 독립적 장소(작업장의 상위개념)

개정내용

제1항 : 사업장에 →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